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품질관리 인력의 전담 요건을 삭제하는 등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품질인증 신청서류의 보완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품질인증 신청서류의 보완 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안 제2조)
- 나.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의 보완결과 확인 절차 규정(안 제13조)
- 다. 품질인증 심사기준 중 품질관리인력의 전담 의무 삭제(안 별표 1)

- 라. 품질인증 사업장심사 담당자 및 보조자의 요건 완화(안 별표 4)
- 마.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의 업무절차도 수정(안 별표 5)
- 바. 시료채취확인서 항목 중 기후조건을 삭제하고, 인증번호를 추가
(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